



## 제 6 장

### 기타 사례

## 제 6 장 | 기타 사례

### 사례. 26

수면내시경 도중 환자가 숨진 사고는 담당의사의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병원의 과실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7부산조정2·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피신청인** 주식회사 케이엔엔(KNN)  
**중 재 부** 부산중재부  
**접 수 일** 2017. 1. 24.  
**처리결과** 기각결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수면마취 도중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의사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의료인 개인의 과실을 병원의 과실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정보도 및 6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병원에 소속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입건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조정대상보도

- 『수면 마취 중 숨진 50대, 병원과실로 드러나』 제하의 보도 (KNN 2017년 1월 23일자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 ■ 내 용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해 7월, KNN이 연속 보도한 내시경 수면 마취 도중 5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의사 47살 홍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해 6월 28일, 부산 ○○동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 수면 마취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동시에 투입하면서 호흡 부전을 일으키고 응급 처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KNN<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수면마취 중 숨진 50대, 병원과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
2. 본문 : 본 방송은 1월 23일 KNN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수면마취 중 숨진 50대, 병원과실 드러나’ 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6년 6월 28일 내시경 수면 마취 도중 5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한 건에 대해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의사 47살 홍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병원과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앞서 병원과실로 보도된 내용은 잘못된 보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앞서 ‘수면 마취 중 숨진 50대, 병원과실’로 보도한 사실은 사실과 무관하며 병원과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 기각결정

## 기각 결정서

### 주문

이 사건 조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이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7년 1월 23일 KNN [모닝와이드] 뉴스 프로그램에서 ‘수면 마취 중 숨진 50대, 병원 과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지난해 7월 KNN이 연속 보도한 내시경 수면 마취 도중 5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의사 홍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병원의 과실이라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로 신청인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정정보도 게재 및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2. 판단

##### 가.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

-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는 내시경 수면 마취 도중 5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 홍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보도로 기사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입건한 의사와 간호사가 사건 당시 신청인 소속 직원이었던 점도 알 수가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는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3.

## 사례. 27

서울시의 택시안심귀가서비스가 신용카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7서울조정548 정정청구
신 청 인	서울특별시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
중 재 부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2017. 3. 22.
처리결과	조정성립(후속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서울시에서 기존의 서비스 대신 카드선승인, 택시 어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도하면서 승객과 기사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방법을 잘 모르고 있고, 신용카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카드선승인 등의 택시안심귀가 서비스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며, 신용카드가 없어도 택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기사의 주된 취지가 서울시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불충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평가의 영역이므로 정정보다는 반론보도 게재를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해당 서비스를 소개하는 후속보도를 제안했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승객도 기사도 어리둥절... 서울 새 '택시안심귀가'』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7년 2월 13일자 010면)

## ■ 내 용

서울시가 2014년 도입했던 ‘근거리무선통신(NFC)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최근 중단하고 ‘카드 선승인 제도’나 ‘민간 스마트폰 택시 애플리케이션’(택시 앱)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 새로운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이용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기존 NFC 서비스는 이용이 저조하고 유지비용이 연 2000만 원 이상 든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 1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받으려는 승객은 카드 선승인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간 택시 앱을 설치해야 한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카드 선승인 제도는 승객이 운행 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패드형 카드단말기에 신용카드를 5만 원을 가결제하면, 운행을 마친 뒤 최종 금액이 결제되고 가결제 금액은 취소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새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문화일보 취재진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택시 승객 10명에게 ‘카드 선승인을 알고 있나’라고 물은 결과, 알고 있다는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게다가 카드 선승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제도다. 시는 ‘카카오 택시’ 등과 같은 택시 앱을 쓰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 택시를 만들겠다더니, 비용이 많이 든다고 민간에 떠넘기느냐”고 분개하고 있다. 대학생 김선정(여·20) 씨는 안심귀가서비스가 카드 선승인과 택시 앱으로 대체됐다는 설명에 “안심 귀가하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현금을 내고 스마트폰이 없는 승객은 위험해도 좋다는 뜻인가”라고 화를 냈다.

택시기사들조차 카드 선승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실정이었다. 개인 택시기사 박모(61) 씨는 “카드 선승인은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며 “이용하는 손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은 “시로부터 협조 공문을 갑작스럽게 전달받아 일선 기사들에게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NFC 서비스도 스마트폰을 이용했기 때문에 ‘카드 선승인’을 못 하더라도 ‘택시 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피신청인은 문화일보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 및 본문은 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와 단으로 보도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승객도 기사도 어리둥절...서울 새 '택시안심귀가'」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신문은 2017년 2월 13일자 사회면에 『승객도 기사도 어리둥절...서울 새 '택시안심귀가'』 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서울시가 'NFC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중단하고 '카드 선승인 제도'나 '민간 스마트폰 택시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하면서 새 제도 시행 첫날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 새로운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이용방법을 잘 모르며, 신용카드가 없으면 안심귀가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 i) 카드 선승인제도는 2007년 택시 카드결제기 도입당시부터 운영되고 있고, 민간 스마트폰 택시 어플리케이션은 2015년 3월부터 다음 카카오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드 선 승인제도를 이용하는 택시 탑승객은 '17.1월 기준으로 월 15만 건이며, 택시 앱의 안심귀가서비스는 월 180만 건, 선불카드 등의 회원가입을 통한 안심귀가서비스는 월 5천 건 이용되고 있습니다.
  - ii) 신용카드를 통한 선승인제도 이외에도, 'taxiansim.com' 홈페이지 가입 후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할 경우 보호자에게 문자메세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택시 앱을 통하여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NFC 서비스 기간에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었습니다.
  - iii) 그간 NFC 안심귀가서비스는 SK플래닛이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택시에 무상 제공한 것으로 이용건수 저조, 유지보수비용 등을 이유로 SK텔레콤 (현재 제공)이 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여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시행하였다거나 신용카드가 없으면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해당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7년 4월 24일(월)까지 문화일보 사회면에 ‘서울시의 변경된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소개하는 후속보도를 하되,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본문의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1일에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4. 10.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안심귀가서비스 범죄예방 효과』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7년 4월 21일자 사회면)

#### ■ 내 용

서울시는 21일 택시정보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로 택시 관련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정보시스템, 카드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카드 선승인 제도, 민간 스마트폰 택시 애플리케이션(택시 앱) 서비스가 결합돼 귀갓길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 앱까지 합치면 서울시 택시 안전 관련 서비스 이용은 연간 2000만 건 이상에 이른다.

2013년 1월 도입된 택시정보시스템은 서울 전체 택시 7만2000대의 운행 거리, 위치,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위치정보만 하루에 2억여 건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택시의 승객 승·하차 위치와 시간, 이동 경로가 저장돼 택시 이용 범죄 차단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찰 등에서 요청하면 택시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제공, 수사에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시작한 카드택시 안심귀가서비스는 승객이 택시안심서비스 홈페이지(www.taxiansim.com)에 회원 가입할 때 등록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택시번호, 승·하차 시간, 위치 등 정보를 보호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 2011년엔 이용 실적이 125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만5756건으로 5년 사이 52배로 급증했다.

시는 2007년 10월부터 카드 선승인 제도도 함께 시행 중이다. 카드 선승인 제도는 승객이 운행 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패드형 카드단말기에 신용카드를 5만 원을 가결제하면, 운행을 마친 뒤 최종 금액이 결제되고 가결제 금액은 취소되는 시스템.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은 없지만, 카드택시 안심귀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탑승 자료가 저장되기 때문에 승객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도입 초기인 2008년 이용 실적이 356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 1342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2331건까지 증가했다.

한편 택시정보시스템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에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시는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시간대별 택시 가동률과 승차율 등을 분석, 지난 3년간 12월에 13일씩 심야 시간대에 개인택시 부제(部制)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370건에 달했던 연말 승차난 관련 민원이 지난해 200건으로 46% 감소했다.

## 사례. 28

신청인 언론사가 발행하는 매체의 호외판에 가짜뉴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7서울조정703·70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주) ○○○○○○○○○○○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JTBC)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7. 4. 7.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뿌린 호외가 대부분 가짜뉴스를 담고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에 언급된 신청인 언론사의 호외판에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으며, 신청인 매체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합법적으로 호외판을 발행할 수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에서 양 측의 조정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신청인은 가짜뉴스로 단정지어 보도하여 피해가 크다며 신청 취지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피신청인은 관련 사건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가짜뉴스’, 신문처럼 전국에 배포…친박 집회도 활용』 제하의 보도 (JTBC 2017년 2월 6일자 ‘뉴스룸’ 프로그램)

## ■ 내 용

- ▷ 앵커 :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테러 단체에 무기를 판매했다’ 지금 보면 황당할 수 있지만, 지난 미국 대선에서 수백만 건의 호응을 얻었던 가짜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가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만은 아니게 됐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촛불집회 참가자 수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사건은 북한의 지령이었다’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조작됐다, 이런 것들이죠. 지난 설 연휴에 퍼진 가짜 뉴스들입니다. 단순히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된 게 아니라, 아예 신문과 유인물 형식으로도 전국 곳곳에 배포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들은 주말 친박 단체 중심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고스란히 소재로 활용됐습니다.

탄핵 국면을 틈타 기승을 부리면서 국정개입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가짜 뉴스들의 현주소, 먼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 기자 : 설 연휴 첫 날인 지난달 27일,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신문처럼 보이는 인쇄물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뿌린 호외입니다.

- ▷ 아파트 주민 : (새벽) 2시 반 정도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는데 그게 (호외) 하나씩 전 세대에 다 꽂혀 있더라고요.

같은 날 부산과 대전, 충북 청주 등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인쇄물이 발견됐습니다. 신문처럼 만들었지만 내용을 보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출처가 없는 내용을 담은 ‘가짜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JTBC의 최순실씨 태블릿PC 관련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보이는 미용 시술 흔적은 다른 사람의 피부를 합성한 조작 영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나온 촛불집회 참가자 수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면서 경찰 추산 인원만 보면 친박집회 인원이 촛불집회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합니다. ‘박사모’ 등 단체들은 지난 설 연휴 이런 인쇄물 300만부를 찍어 전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가짜뉴스’, 신문처럼 전국에 배포…친박 집회도 활용”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월 6일 <뉴스룸>에서 “가짜뉴스’, 신문처럼 전국에 배포… 친박 집회도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미디어비평지인 ‘○○○○’의 설날 특집 호외판을 영상으로 여러 번 반복해 비추면서, 이를 신문과 유인물 형식으로 전국 곳곳에 배포된 ‘가짜뉴스’라고 규정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의 설날 특집 호외판 기사 내용들 중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진 것은 전혀 없었으며, 또한 ‘○○○○’는 호외판을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잡지사업 매체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 조정불성립 결정서

### 주문

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

### 이유

이 사건 조정신청은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8.

## 사례. 29

이웃주민의 이유없는 칼부림에 신청인들이 허겁지겁 도망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사 건** 2017서울조정892·893, 2017서울조정894·895(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1. 이○○, 2. 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방송(MBN, 인터넷MBN)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7. 5. 16.  
**처리결과** 각 조정성립(후속보도, 기사수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이웃에게 이유없이 칼부림을 한 ‘묻지마 범죄’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현장에 있었던 신청인들이 ‘허겁지겁 도망갔다’고 표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잠시 자리를 피했을 뿐, 곧 범죄 현장에서 범인과 대항하여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다고 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신청인들의 인터뷰를 포함한 후속보도 및 문제된 표현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수정하기로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이웃에게 이유없이 칼부림...끊이지 않는 묻지마 범죄』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5월 11일자 ‘뉴스8’ 프로그램, 인터넷 MBN 2017년 5월 11일자 사회면)
- 내 용
  - ▷ 앵커 : 오늘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에게 아무 이유없이 칼을 휘두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본인에 대해 화가 났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였습니다.

▷ 기자 :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두 남성에게 누군가 갑자기 달려듭니다. 두 남성은 허겁지겁 도망가고 양 손에 뭔가를 든 남성이 다른 행인들을 위협하며 뒤를 쫓습니다.

50대 김 씨가 자신의 동네에서 오늘 새벽 광란의 흥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여성에게 느닷없이 흥기를 휘두른 뒤 도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구잡이로 흥기를 휘둘렀습니다.

▷ 동네주민 : “(피해자가) 잘해줬지, 여기 오면 요구르트도 주고, 이야기도 시키고 피해자가 얼마나 놀랐을까.”

잠시 뒤 이곳에 나타난 김 씨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다시 흥기를 휘둘렀습니다. 남녀 두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 서울 성북경찰서 관계자 : “본인에 대한 스트레스로 화가 나서 그랬고 피해자들 하고는 원한 관계가 없고…”

이런 ‘묻지마 범죄’는 매년 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위협에 빠질 수 있는 묻지마 범죄에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MBN 뉴스8>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MBN(<http://mbn.mk.co.kr>)의 홈페이지 뉴스>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이웃에게 이유없이 칼부림... 끊이지 않는 묻지마 범죄’
2.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5월 11일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웃에게 이유없이 칼부림...끊이지 않는 묻지마 범죄”라는 제목으로 두 남성이 허겁지겁 도망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이○○과 이○○씨는 도망가기보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범인과 싸운 사실이 여러 CCTV에 찍혀있고 같은 사실을 MBC8시 뉴스 동영상에도 범인을 가격하는 영상이 나와있습니다. 이에 두 남성이 허겁지겁 도망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이 합의서를 통해 신청인들에게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방송은 신청인들과 관련하여 “용감한 시민들”(묻지마 범죄에서 시민들의 더 큰 피해를 막은 용감한 시민들)이라는 부제로 2017년 6월 30일까지 「굿모닝MBN」뉴스 프로그램 중간 부분에 진행자의 통상적인 뉴스 진행 방식으로 다루되, 신청인들의 인터뷰를 포함하도록 하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뉴스 제작 및 방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2017년 6월 30일까지  
가. 인터넷MBN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2항에 따라 보도된 뉴스 제목을 통상의 방법으로 1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2항에 따라 보도된 뉴스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 나.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2017년 6월 5일까지 인터넷MBN 홈페이지 사회면 원조정대상기사의 텍스트 중 “두 남성은 허겁지겁 도망가고”의 표현을 “두 남성은 잠시 자리를 피하고”로 수정한다.
  5. 피신청인들은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들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로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6. 피신청인들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5. 29.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문지마 범죄에 맨손으로 맞선 태권도 관장』 제하의 보도 (MBN 2017년 6월 13일자 ‘굿모닝MBN’프로그램, 인터넷MBN 6월 13일자 ‘다시보기’ 섹션)
- 내 용
  - ▷ 앵커 : 지난달 서울에서 한 남성이 아무 이유도 없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문지마 범죄’가 일어났었죠. 당시 자리에 있던 두 태권도 관장이 아니었다면 피해가 더 커질 뻔했습니다.
  - ▷ 기자 :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는 두 남성에게 파란 점퍼를 입은 남성이 달려듭니다. 양손에 흉기를 쥐고 있는 남성의 공격을 받은 남성들은 주변 의자를 집어들어 맞섭니다. 담소를 나누던 두 태권도 관장에게 느닷없이 달려든 사람은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 ▷ 이○○ / 서울 쌍문동 : “칼을 양손에 두 개를 들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시민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김 씨는 앞서 다른 행인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서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 ▷ 이△△ / 서울 정릉동 : “이 사람이 도망 못 가게 저희가 포위하듯이 (쫓았고) ‘신고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같이 소리치면서…”

결국 손에 큰 부상까지 입었지만, 두 사람은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 ▷ 이△△ / 서울 정릉동 : “손이 다치고, 어디가 아프고 그런 정신은 없었어요.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같이 잡아야겠다’, 다른 주민들 피해 없도록…”

몸을 아끼지 않고 달려든 시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더 큰 참변을 막아냈습니다.

### 사례. 30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제보 급증의 부작용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서울시에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b>사 건</b>	2017서울조정1622, 2017서울조정1623(병합) 각 손배청구
<b>신 청 인</b>	이 ○
<b>피신청인</b>	한국방송공사(KBS-1TV),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KBS미디어)
<b>중 재 부</b>	서울제6중재부
<b>접 수 일</b>	2017. 8. 26.
<b>처리결과</b>	각 조정성립(기사수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등 제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신청인의 블랙박스 신고 영상을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소유권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영상 속 신청인의 음성을 번조하지 않은 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인터넷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로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민간 파수꾼 ‘블랙박스’ 제보 급증』 제하의 보도 (KBS-1TV 2017년 7월 8일자 ‘뉴스9’ 프로그램, KBS미디어 2017년 7월 8일자 뉴스면)

#### ■ 내 용

- ▷ 앵커 :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다 다른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 제보로 단속된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만 건 넘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범죄 예방이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 ▷ 기자 : 승용차 한 대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듭니다. 뒤따르던 운전자는 이 장면을 고스란히 블랙박스 영상에 담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 블랙박스 신고자(음성변조) : “평소에도 그런 차 많이 보긴 했는데.. 화도 났고 그래서 신고를 하긴 했는데, 좀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죠.”
- 웬만해선 경찰 단속으로 잡기 힘든 깜빡이 미사용 차로변경입니다. 이런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올 들어 적발된 건수만 벌써 5만 8천여 건, 위반 정도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 고지서나 최소 경고장이 집으로 날아갑니다.
- ▷ 법규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황당하더라고요. 거기는 카메라도 없고... 경각심을 한 번 얻어 가지고 무조건 이제 방향지시등 켜고 차선변경을 하고...”
- 버스 뒤를 따라 전용차로를 달리는 암체 차량들.
- ▷ 신고자 : “53 노에 2000 노래방 할 때 ‘노.’”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골 신고 대상입니다.
- 별도 포상금이 없는데도 시민들의 제보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주정차는 올해 각각 30만 건이 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편리함 이면에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에 별 제약이 없다 보니 악의적인 상습 민원이 폭주하는 데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불신사회가 초래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적인 해결을 보려는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일부 논란 속에 일상 속 불법을 감시하는 시민 파수꾼들의 카메라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2017년 10월 20일까지,
  - 가. KBS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이 제공한 영상 부분을 삭제한다.
  - 나.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들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가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2.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해 피신청인들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0. 11.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기사 수정(신청인 영상부분 삭제)